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70

발의연월일: 2021. 4. 19.

발 의 자:이원욱·강득구·김민철

김수흥 · 김철민 · 박홍근

유정주 • 이용빈 • 이원택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,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출입이 제한되어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, 장애인, 어린이 등이 자주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,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3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제4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-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- 6. 「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
- 7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	제13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 -
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	
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	
록 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
	른 노인복지시설
<u><신 설></u>	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
	<u>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</u>
<u><신 설></u>	6. 「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
	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
	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
<u><신 설></u>	7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
	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
	<u>이놀이시설</u>
<u>4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